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 연월일 | 20 . . . (제 회)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개발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3.19. 공포, 2024.9.20. 시행)되어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기시설 설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2)

전기기설의 설치범위를 지역개발 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규정

나.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 확대(안 제20조, 제22조)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위탁)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으로 추가

다. 기반시설 구체화 문구 변경(안 제58조)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법의 문구와 동일하게 ‘교통 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검토 요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국도로공사

제58조제1항 중 ““도로·철도”를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전기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 상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을 말한다.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p> <p>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⑥·⑦ (생략)</p> | <p>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한국도로공사법</u>」에 따른 <u>한국도로공사</u>(이하 “<u>한국도로공사</u>”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
| <p>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생략)</p> <p>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 <p>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한국도로공사</u></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u>도로·철도</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p> | <p>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 ----- “<u>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u> -----</p>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전기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 상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3665 |